

제 3 장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 1 조 (목 적)

이 실천사항은 (주)반도건설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운용 실천사항)

제 ① 항 (기본원칙)

이 실천사항은 (주)반도건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.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(주)반도건설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.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 ② 항 (내부 심의위원회 설치.운용 실천사항)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나. 내부심의 위원회 구성

내부 심의위원회는 각자 대표이사(2), 시공본부 임원(1), ESG위원회 위원(1) 4인으로 구성한다.

다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- ㄱ.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안건이 없는 경우는 서면 결의로 “안건 없음”이라고 기록 관리한다.
- ㄴ. 내부 심의위원회는 (주)반도건설의 직전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협력사별 당해연도 개별 하도급 거래 (예상)금액이 ※ 일정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하여야 한다.

※ 일정비율

	하도급 거래금액	일정비율
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 거래금액이	· 1,000억원 미만인 경우	10%
	· 1,000억원 이상 ~ 5,000억원 미만인 경우	5%
	· 5,000억원 이상 ~ 1조원 미만인 경우	2%
	· 1조원 이상인 경우	1%

- ㄷ. 당사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90%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저가 심의제를 적용하여 하도급 적정성을 심의 하여야 한다.
- ㄹ.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 하여야 한다.
- ㅁ. 필요 시 관련 수급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.
- ㅂ.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〈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〉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
- 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 여부
-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
-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
- ⑤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

라. 심의 문서 등 보관

내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.

마.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 심의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는 100억 이상의 계약이 종료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적법성 사후검증을 실시한다.

〈사후검증 주요 심의사항〉

- ① 서면교부 여부
- ②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여부
- ③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여부
- ④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
- ⑤ 부당한 하자보수 책임 전가 여부
- ⑥ 기술유용행위 발생 여부

(2) 심의시기 / 대상

: 반기 1회 / 100억 이상 하도급거래 종료 건

바. 분쟁조정위원회 심의

- (1)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
- (2)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절차

단 계	절 차	내 용	비 고
1	분쟁조정신청 접수	· 당사 홈페이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한 분쟁 접수	
2	분쟁 내용 확인	· 육하원칙 의거 내용 확인	
3	분쟁조정위원회 심의	· 당사자 의견 개진 및 합의안 제시	
4	재심의	· 1차 합의 불발 시 최대 2회 재심의	

(3)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및 참석인원

- 심의위원 : 감사실 임원, 법무팀 임원, 시공본부 임원
- 간 사 : 동반성장 담당자